

밸러스트수관리협약 스페인과 브라질 비준

30개국 비준, 세계선복량 35% 이상시 발효

국제해사기구(IMO)는 1월 25일, 스페인과 브라질이 '선박의 밸러스트수 및 침전물의 규제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IMO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에 처음으로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IMO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은 선박의 밸러스트수 탱크에 들어있는 유해한 해양생물종이 다른 국가의 해양에 배출됨에 따라 야기되는 도착 생태계의 파괴 등을 막기 위해 제정한 국제환경협약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밸러스트수 및 침전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협약에 정해진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박에 있는 밸러스트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은 2004년 2월13일 IMO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고, 30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가입문서를 제출한 국가의 선복량의 합계가 총톤수로 전세계 선복량의 35%를 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동 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침서는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IMO 제5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2005. 7. 18-22)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IMO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밸러스트수 교환(B-4)은 3단계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1단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수심 200m △2단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 수심 200m △3단계는 항만당국이 교환 가능해역 지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밸러스트수 교환기준(D-1)의 경우 밸러스트수 용적기준으로 95%를 교환하도록 하는 한편, 현존선은 탱크 용적의 3배 펌핑도 인정하고, 95% 교환을 만족시킬 경우 3배 이하의 펌핑도 인정하고 있다.

미 의회 공컨테이너 보안대책 강화 컨테이너에 대한 봉인실험 법안 심의

금년 초에 개최한 미국 의회(제109기)에, 공컨테이너의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법안(HR163)이 제출되었다.

동 법안은 하주나 운송인들에 대해 공컨테이너에 대해서도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봉인하도록 함으로써 컨테이너의 보안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법안은 지난해 열린 제108기 회기에 제출되어지만, 성립되지 않았었다.

동법안은 민주당 하원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공컨테이너 봉인실험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국토안전보장부의 인증을 받은 하주, 운송인, 포워드, 터미널운영자, 항만관리자, 노동조직이 공컨테이너의 봉인방법으로 보안을 확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법안은 보안대책의 효율성과 비용대 효과, 원활한 물류확보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돼 입법허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